

2023년 일부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변경 안내

-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아래의 내용은 평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표가 아니므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 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기 안내된 내용

① [신설] 자체평가제도의 적정성

2023년(신설) 평가기준	[가점항목 신설] (가점: 최대 +10점)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기한 내 K2B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차등 가점 적용
-------------------	--

② [A.3.2.4] 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

2021년(기존) 평가기준	원내용/출장용 검사시 사용한 일회용품은 재사용 불가능하며, 일반의료폐기물로 폐기 처리 확인(일반의료폐기물 보관 박스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



2023년(변경) 평가기준	원내용/출장용 검사 시 사용한 일회용품은 재사용 불가능 (이하 삭제) 하며, 일반의료폐기물로 폐기 처리 확인(일반의료폐기물 보관 박스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

③ [A.3.2.6] 청력 검사실 및 부스

2021년(기존) 평가기준	※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출장용 청력검사실 포함하여 배경소음 측정(연1회 이상) * '23년 평가기준 변경(안) : 배경소음 측정은 ISO 기준에 따라 연4회 실시(출장검진 포함)
-------------------	---



2023년(변경) 평가기준	※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출장용 청력검사실 포함하여 배경소음 측정(연1회 이상) (이하 삭제) * '23년 평가기준 변경(안) : 배경소음 측정은 ISO 기준에 따라 연4회 실시(출장검진 포함)
-------------------	---

④ [A.3.2.7]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

2021년(기존)
평가기준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은 연1회 이상 실시(배점: 10점)



2023년(신설)
평가기준

[배점항목 외 가점항목 추가 신설] (가점: 최대 +5점)

ISO 기준에 따라,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을 “분기당 1회 이상 (연4회 이상)” 실시(출장검진 포함)시 차등 가점 부여 예정

가점기준
(예시)

○ 8회 실시 : +5점

○ 5~7회 실시 : +3점

○ 3~4회 실시 : +2점

※ 평가주기가 2년이므로 평가대상기간동안 총 8회를 권고

2 추가 변경사항

①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2021년(기존)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 4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 3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가 3점	☐ 2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기관)	☐ 1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미실시 기관)	☐ 0



2023년(변경)
평가기준

본 평가항목은 검진을 위한 사전조사(대상업무, 유해인자 및 대상자 선정 등)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새로채취 시 전문인력 필요를 의미하므로, 기관의 자체분석 여부에 따른 차등 불필요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 4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 3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가 3점	☐ 20
합산점수가 0점	☐ 0

㉔ [A.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2021년(기존)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A.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60
	A.2.3.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10
	A.2.3.2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10
	A.2.3.3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인력 제외)	10
	A.2.3.4	내부 직무교육 실시	10
	A.2.3.5	학술대회 참여정도	10
	A.2.3.6	특검기관 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10



2023년(변경) 평가기준	A.2.3의 6개 세부항목 중 A.2.3.6 항목 삭제 후, A.2.3.2와 A.2.3.3 항목 배점을 15점으로 상향하여 전체 배점 유지		
	세부평가항목		배점
	A.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60
	A.2.3.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10
	A.2.3.2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15
	A.2.3.3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인력 제외)	15
	A.2.3.4	내부 직무교육 실시	10
	A.2.3.5	학술대회 참여정도	10